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0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 개최일시 : 2015. 12. 14(월) 13:36 ~ 14:05

☐ 개최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위 원 : 6명(차준택, 유일용, 허준, 이영훈, 신영은, 이용범)

○ 공무원 : 이용철 기획관리실장, 박명성 재정기획관, 천준호 정책기획관

☐ 주요내용

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참석위원 : 4명(차준택, 유일용, 이용범, 이영훈)

☐ 집행부(재정기획관) 의견 : 별다른 의견 없음.

☐ 주요 질의내용

< 이영훈 의원 >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4%의 이자로 할 경우
5년 기간내에는 상당한 변수가 있을 수 있음.

○ 입찰공고시 4% 이자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몇 회 분할까지 입찰공
고에 언급할 수 있나? 몇회 분할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 것임.

→ 당시 시장상황에 맞게 공고할 예정임

< 이용범 의원 >

○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건이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익이고 市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지 않나?

→ 매수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람.

○ 시의 입장에서는 6%인데 4%로 고정하면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임

→ 현재 시장금리가 4%인 것은 상당한 것임.

< 신영은 의원 >

○ 이자를 많이 받아 득이 되는지 논의하는 것은 논외의 사항임. 매수자
의 참여 폭을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야 하며 부동산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 차준택 의원 >

○ 공고를 낼 때 납부방법을 담을 수 있나?

→ 4%의 이자는 고정적인 상황이고, 몇 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납부 방법을 고시하는 것임. 이번달 22일과 23일에 부동산 페어가 있음. 그때 매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임.

5.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참석위원 : 5명(차준택, 유일용, 허준, 이영훈, 신영은)

[수정가결]

○ 조례 제명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를 삭제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1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며

안 제6조를 삭제하여 안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제6조로 하되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7조의 제목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여

안 제11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하여 안 제13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를 각각 삭제하여 안 제18조를 제9조로 한다.

□ 의원 요구자료 : 없음

□ 주요 질의내용

< 유일용 의원 >

- 정관에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되는 것은 법률순서에 맞지 않음. 조례는 인천시민의 합의적 성격이고, 정관은 이사회 합의적 성격임. 조례에 따라 정관이 구속되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편성할 필요가 없음.

< 이영훈 의원 >

-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피해가 날 수 있음. 본인 과실이 아니어도 관공서 과실일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음.
- 관련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님.

< 이용범 의원 >

-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를 삭제하였음. 재해구호법에서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서 조례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해당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 적절하지 않음.

< 차준택 의원 >

- 조례 내용이 일괄개정 취지에 맞게 단순하지 않고, 정관에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음. 정관에 있어도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에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맞음.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로 조례상 명확히 표기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상위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중복규정으로 보아 불필요하다고 봄
- 지난 제9차 회의시 보류된 사항 중 개별조례로 다뤄야 할 것들은 제외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하였음.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보고자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 동 향